



# 직장 내 차별과 추행

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t Work

## 어떠한 종류의 직장 내 차별과 추행이 불법으로 간주 되나요?

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신의 고용을 거절하거나, 다른 고용인들과는 다른 고용규칙이나 조건을 당신에게 부과하거나, 추행하거나, 강등시키거나, 해고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.

- 인종
- 성별
- 피부색
- 신념
- 종교
- 임신
- 가족상태
- 국적(이 경우, 고용주는 당신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.)
- 결혼여부
- 생활보호 대상의 여부
- 장애
- 나이
- 성적 정체성
- 유전적 정보
- 지역 인권위원회 회원

당신은 고용에 있어서 파산을 이유로 다른 차별을 받거나, 추행을 당하거나 해고 당할 수 없습니다. 파산은 당신이 고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는 있으나, 파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당신의 고용이 거부 될 수 없습니다.

## 직장 내 차별과 추행의 일반적인 예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?

- 다른 인종의 고용인들도 같은 훈련, 경력, 근무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고용인들에게만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.
- 당신의 직장 동료가 당신을 인종차별적인 호칭으로 부르거나,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직장 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.
- 직장 상사와의 사적이거나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직장 상사가 데이트를 요청하거나 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.
- 고용주가 결혼한 여성은 임신을 하거나 휴직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승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,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업무적 의무로부터 방해 받을 것을 이유로 고용주가 그들을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.



-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, 매니저가 당신에게 소리 지르는 경우.
- 당신이 그곳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당신이 56살이 되었을 때, 고용주가 당신을 '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'며 강등시키는 경우.

### 직장 내 차별과 직장 추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?

당신의 인종, 성별, 종교를 이유로 업무적인 차별과 추행으로부터 대항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. 만약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그에 대하여 다시 재 요청을 할 것이 불편한 경우, 당신의 상사나 인사과에 고지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.

### 직장 내 차별과 추행으로부터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?

- 직장 내 차별이나 추행으로 의심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적으세요.
- 시간과 날짜,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적으세요.
- 당시의 발언과, 대화를 적어 놓으세요.
- 차별이나 추행에 관하여 당신의 상사에게 고지하세요.




###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?

아니요, 당신이 불법적인 차별이나 추행의 피해자라는 것을 선의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. 만약 당신이 차별이나 추행을 고지한 이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, 이에 대하여 소송 할 수 있습니다.

**차별이나 추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만약 차별이나 추행에 대하여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단의 기관에 전화하세요.**

차별이나 추행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있는 이후 특정 기간 안에 제기 되어야 합니다. 이러한 기간은 당신이 주장하는 사안에 따라, 그리고 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법적 주장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.

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기관에 연락하세요.

<b>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Rights</b>	<b>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</b>
Freeman Building	330 South 2 <sup>nd</sup> Ave., Suite 430
625 Robert St. North	Minneapolis, MN 55401
St. Paul, MN 55155	
	Phone: (612) 335-4040
Phone: (651) 539-1100 or 1-(800) 657-3704	TTY: (612) 335-4045
TTY: (651) 296-1283	<a href="http://www.eeoc.gov">www.eeoc.gov</a>
<a href="http://mn.gov/mdhr/">http://mn.gov/mdhr/</a> (영어만 이용 가능)	(한국어 이용 가능)
	
<b>Minneapolis Department of Civil Rights</b>	
City Hall, Room 239	
350 South 5 <sup>th</sup> St	
Minneapolis, MN 55415	
Phone: (612) 673-3012	
TTY: (612) 673-2044	
<a href="http://www.ci.minneapolis.mn.us/citywork/civil-rights/commission.html">www.ci.minneapolis.mn.us/citywork/civil-rights/commission.html</a>	

본 자료서는 법률 정보일 뿐,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. 본 자료서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 업데이트 사항, 자료서 목록, 또는 다른 형식의 포맷에 대해서는 본 기관으로 요청해 주십시오.

© 2020 Minnesota Legal Services Coalition. This document can be reproduced and used for non-commercial pers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. All other rights reserved. This notice has to stay on all copies. Reproduction, distribution, and use for commercial purposes are strictly prohibited.